

학교법인 한민족학원 정관

직전개정일 : 2015. 02. 16.

최종개정일 : 2018. 09. 11.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설립의 건학이념인 성경(3.16복음)과 한민족사를 바탕으로 국가와 온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 조의1(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사이버대학을 설치, 운영한다.

제 4 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실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90 에 둔다.

제 5 조(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 6 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7 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 9 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 9 조의2(예산, 결산의 공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결산은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10 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이 법인의 의무부담 또는 관리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회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회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 12 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3 조(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설치) 학교회계에 속하는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하여 학교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세계사이버대학에 예산, 결산자문위원회(이하 이 절에는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14 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11명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교원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의 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15 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16 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3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7 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18조 내지 제21조 (삭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 22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명
2. 감사 2명

② 전항의 임원 중 사립학교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

제 23 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다만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24 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감독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임기 중 임원의 해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2/3이상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및 이 정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본 법인 및 설치·경영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에 지장을 초래케 한 때

제 24 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설치 경영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 받은 자 중에 이사회에서 선임된 자로 한다.
2. 개방이사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제 24 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2명으로 한다.

제 24 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요청 하여야 한다.

②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③ 추천된 개방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④ 개방이사의 선임에 관하여서는 감독청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일반임원의 선임절차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제 24 조의5(추천 감사의 선임) ①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이하 “추천감사”라 한다)를 선임한다.

② 전항에 의한 추천감사의 선임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 24조의4(개방이사 선임)을 준용한다.

제 24 조의6(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세계사이버대학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명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명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명

제 25 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사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⑤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 26 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 27 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28 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9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30 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

을 겸할 수 없다

-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 31 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32 조(이사회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제 33 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34 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34 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 35조(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 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 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 36 조(수익사업의 종류) (삭제)

제 37 조(수익사업의 명칭) (삭제)

제 38 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삭제)

제 39 조(관리인) (삭제)

제 5 장 해 산

제 40 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41 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 법인이

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 42 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 43 조(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세계사이버대학 총장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조교는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1. 교 수 : 정년

2. 부 교 수 : 6년

3. 조 교 수 : 2년

4. 조 교 : 1년

④ 세계사이버대학 부총장 등의 보직은 학교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이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은 무흠한 기독교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제 43 조의 2(삭제)

제 43 조의 3(전형결과와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 17조를 준용한다.

제 43 조의 4(정년) ① 제43조 제3항의 각 대학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각 대학의 장의 정년은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조교의 정년은 각 대학이 조교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②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대학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한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 43 조의 5(비전임 교원) ① 각 대학의 장은 석좌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의 비전임 교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비전임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시간강사를 제외한 비전임 교원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학교 장이 임용하여야 한다.

제 2 관 신분보장

제 44 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정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휴직신청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는 소행이 있어 학교의 체면을 손상하였을 때.

제 45 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재직 중 2회에 한하되, 그 기간은 각각 1년 이내로 한다.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8. 제44조의9호의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 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제 46 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 47 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4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 ② 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48 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 ⑤ 임면권자가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 시킬 수 있다.

제 49 조(보수) ①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봉 계약의 권한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보수체계는 계약직 연봉제를 기준으로 하되 제1항에 따라서 성과급 성격의 각종 수당을 예산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③ 계약직 연봉제의 기준과 퇴직금 지급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50 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 50 조의 2(명예퇴직수당)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10년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50 조의 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 51 조(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세계사이버대학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세계사이버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52 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계사이버대학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석좌교수, 명예교수를 임면제청 하고자 할 때의 임면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 53 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세계사이버대학 인사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4명의 교원과 학사운영처장으로 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54 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계사이버대학의 학사운영처장으로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5 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세계사이버대학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6 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세계사이버대학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 57 조(인사위원회의 간사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세계사이버대학의 소속직원 중에서 세계사이버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제 58 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 59 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 징계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 60 조 (삭제)

제 61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2 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63 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63 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63 조의 3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명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64 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65 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 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66 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 66 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 1.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2.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7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 68 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재심위원회

제 69 조 내지 제 82 조 (삭제)

제 4 절 사 무 직 원

제 83 조 (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 한다.

제 84 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 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 이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일반직원은 무흠한 세례교인 이라야 한다.

⑤ 삭제

제 85 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85 조의 2 (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각 대학의 직원인사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86 조 (보수) ①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봉 계약의 권한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수체계는 계약직 연봉제를 기준으로 하되 제1항에 따라서 성과급 성격의 각종 수당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직 연봉제의 기준과 퇴직금 지급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87 조 (신분보장) ①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일반직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에 자진하여 퇴직할 때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88 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 제 89 조 (법인사무국 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여 또는 참사로 보한다.
- ② 법인사무국에는 법인과, 재무과, 사업과를 두며, 과장은 주사 또는 부주사로 보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분장업무를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한민학교

- 제 90 조 (총장등) (삭제)
- 제 91 조 (하부조직) (삭제)
- 제 92 조 (부속시설) (삭제)
- 제 93 조 (종합학술정보센터) (삭제)
- 제 93 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삭제)
- 제 93 조의3(평의원회의 구성) (삭제)
- 제 93 조의4(평의원회 의장 등) (삭제)
- 제 93 조의5(평의원의 임기) (삭제).
- 제 93 조의6(평의원회의 기능) (삭제)
- 제 93 조의7(평의원회 운영규정) (삭제)

제 3 절 세계사이버대학

제 94 조 (총장 등) ① 세계사이버대학에 총장을 둔다.

- ②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 ③ 세계사이버대학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95 조(하부조직) 세계사이버대학에는 학사운영처, 기획홍보처, 총무처를 두고, 처 내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실무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실무부서의 구성과 변경 시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삭제)
- 2. (삭제)
- 3. (삭제)
- 4. (삭제)
- 5. (삭제)

- ② 학사운영처장, 기획홍보처장은 전임교원으로 보하고, 총무처장은 참사나 부참사로 한다.
- ③ 과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의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따로 정한다.

제 96 조(부속기관 등) ① 세계사이버대학은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 1. 부속기관 : 신문사, 방송국, 평생교육원, 어학원(한국어, 기타 외국어) 이 외에도 필요 시에는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를 거쳐 기타 부속기관을 둘 수 있고, 이때는 학칙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 2. 삭제
 - 3. 부설연구소 : 건학이념 실천 연구소를 두며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분과를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를 거쳐 둘 수 있다.
-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교원으로 하며, 학교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겸보한다. 다만, 필요시 시간강사를 제외한 비전임교원이나 계약직 또는 별정직 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 4 절 대학평의위원회

제 96 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세계사이버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96 조의3(평의원회의 구성) ①평의회는 교원, 직원,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4명
2. 직원 3명
3. 학생 1명
4.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명

② 평의원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중 어느 한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 96 조의4(평의회 의장 등) ① 평의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 96 조의5(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96 조의6(평의원회의 기능)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 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96 조의7(평의원회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절 정 원

제 97 조(정원) 법인과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3과 같다.

제 8 장 보 칙

제 98 조 (공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 99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100 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
이사겸 이사장	패츄리사김	1946. 5. 3.	4년	대전시 중구 가장동 21-5
이 사	김찬영	1936. 3.15.	4년	대전시 중구 가장동 21-5
	박위릭	1925.10.26.	4년	대전시 중구 가장동 21-5
	김진문	1933. 2.11.	2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반포동 257-3
	성완용	1911.12.28	2년	대전시 중구 문창동 17
	현정규	1945. 7. 9.	2년	대전시 중구 가장동 21-5
감 사	이춘식	1920. 8. 3.	2년	대전시 중구 목동 31-10
	최용호	1938. 4.10.	1년	대전시 중구 신흥동 161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신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학교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신학교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 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4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4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신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학교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

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신학교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임원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임기 변동에 따른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임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임원의 임기 만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학교장의 임기 변동에 따른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된 학장의 임기 만료는 종전의 규정과 당해 임명기간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보고-기구개편 제92조)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보고-기구개편 제95, 96조)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보고-기구개편 제91조, 제92조, 제95조)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오자 및 자구정정 - 제5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22조, 제24조의5,
제24조의6, 제25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50조, 제52조, 제53조, 제56조, 제59조, 제63조의2,
제65조, 제83조, 제87조, 제90조, 제93조의4

조항삭제 및 신설 - 제43조의2(삭제),
제43조의4, 제43조의5, 제85조의2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자구 변경 - 제43조(2010년 4월 21일 승인)

사무 기구 - 제91조, 92조, 94조, 95조, 96조(2010년 4월 12일 보고)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0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보고 - 부속시설의 장 임면권 변경 제92조 ②, 제96조 ②)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0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보고 - 한민학교 부속시설 국제교류원 신설 제92조 ①)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1년 0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승인사항 - 임원(이사) 정수 변경 제22조 1항 ①호 : 8명에서 9명으로 변경)

※ (이사장 1명 포함)을 교과부 사립대학제도과-5053호(2011.09.19.)에 따라 삭제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1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보고사항 - 한민학교, 세계사이버대학 부속시설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함.

제92조 ①항 1호 및 제96조 ①항 1호)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2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보고사항 - ㉠ 한민학교의 행정 부총장 및 직능 부총장 임용의 근거를 명확히 함. 제90조 ③항, ④항

㉡ 한민학교의 하부 조직에 총무과와 부속기관에 한국어교육원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 제91조 ①항, 제92조 ①항 1호

㉢ 세계사이버대학의 총무처, 교수학습지원과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 제95조 ①항

㉣ 세계사이버대학의 총무처장 임명의 근거를 명확히 함. 제95조 ②항

㉤ 세계사이버대학의 각종 연구소를 통폐합해 “건학이념 실천 연구소”를 설치하고 각 분과를 두는 근거를 명확히 함.

제96조 ①항 3호)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2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변경사항 -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에 따라 전임강사를 폐지하고 조교수로
변경 함. 제43조 ③항 4호 및 제52조 ①항 1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본 법인 산하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는 조교수로 직급을
변경하고, 전임강사의 경력을 조교수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또 이 외의 승진,
재임용, 재계약, 처우 등 제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임용 형태에 따른 관련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정관변경 승인제도 폐지 및 사후 보고 제 시행 사립학교법 법률 제11216호 2012.
07.27.부터 시행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변경사항 - 비전임 교원(시간강사를 제외)의 임용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
함. 제43조의 5 ③항)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2년 1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변경조항 - 제5조, 제22조 ①항 1호, 제94조 ③, ④항, 제95조 ①항 1호)
(신설조항 - 제95조 ①항 4호)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3년 0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변경조항 - 제4조, 제25조 ⑤항 후반 단서 삭제, 제37조, 제38조, 제43조의
5 ③항, 제90조 ③항, ④항, 제91조 ①, ②항, 제93조의 3 ①항
2호, 제94조 ③, ④항, 제95조 ②항, ④항, 제96조 ①항 3호)
(신설조항 - 제95조 ①항, ①항 5호, ②항, 제96조 ①항 1호)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4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개정 정관 중 제3조의1(설치학교) 2호 및 제3조의2는 관할청의 승인으로 세계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변경조항 - 제3조의1 ①항, 제4조, 제24조의6 ①항, 제43조 ①항, 제43조 ④항, 제51조 ①항, 제52조 ①항 1, 제53조 ①항, 제54조 ①항, 제55조 ①항, 제56조 ①항, 제57조 ②항, 제3절, 제4절, 제5절, 97조

(삭제조항 - 제3조의1 ①항, 제3조의1 ②항, 제3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51조 ②항,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3조의4, 제93조의5, 제93조의6, 제93조의7, 별표 2

(신설조항 - 96조의2, 96조의3, 96조의4, 96조의5, 96조의6, 96조의7)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5년 0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개정 정관 중 제4절 대학평의회 제96조의 2(대학평의원의 설치) 내지 제96조의 7(평의회 운영규정)는 관할청의 승인으로 세계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변경조항 - 제5조 2항, 제24조2 2, 제94조 ③, 제98조)

(삭제조항 - 제24조2 2, 제94조 ③, 제94조 ④, 제95조 ①, 제95조 ① 1,2,3,4,5 , 제95조 ②)

(신설조항 - 제95조 ①, 제95조 ②)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8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개정 정관 중 제4절 대학평의회 제96조의 2(대학평의원의 설치) 내지 제96조의 7(평의회 운영규정)는 관할청의 승인으로 세계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변경조항 - 제53조 ①, 제54조 ①, 제59조 ①, 제59조 ②, 제66조 2 ①, 제95조)

(삭제조항 - 제84조 ⑤)

(신설조항 - 제66조 2 ②)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계	9명
일반직계	5명
4급(참사)	1명
5급(부참사)	1명
6급(주사)	1명
8급(서기)	1명
9급(부서기)	1명
기능직계	4명
운전기사	1명
타자원	1명
고용원	2명

(별표 3)

세계사이버대학 일반직원 정원(제97조 관련)

총계	53명
일반직계	31명
4급(참 사)	2명
5급(부참사)	3명
6급(주 사)	3명
7급(부주사)	3명
8급(서 기)	5명
9급(부서기)	15명
기술직계	16명
전산기사	9명
4급(전산참사)	1명
5급(전산부참사)	1명
6급(전산주사)	1명
7급(전산부주사)	1명
8급(전산서기)	2명
9급(전산부서기)	3명
촬영기사	7명
6급(촬영주사)	1명
7급(촬영부주사)	1명
8급(촬영서기)	2명
9급(촬영부서기)	3명
기능직계	5명
전기원	1명
8등급	1명
보조원	2명
9등급	2명
경비원	2명
8등급	2명
별정직계	1명
교목실장	1명
5급	